

<input type="checkbox"/> 축산물운반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산물판매업		영업신고서	처리기간 뒤쪽 참조	
신고인	①성명	②주민(법인) 등록번호		
	③주소	(전화 :)		
	④영업장 명칭 (상호)	⑤ 축산물판매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식육판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우유류판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산물수입판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	
	⑥소재지	(전화 :)		
	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※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 합니다.			수수료 1만원	
구비서류 1.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. 시설사용계약서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			
공부 확인	구분	일자	결과	확인자성명 (서명 또는 인)
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대장등본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계획관계확인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필증			

※ 신고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국립수의과학검역원	처리부서	축산과
	시·군·구	처리기간	3일
유의사항	<p>1.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 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</p> <p>2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/p>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